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구분	내용
공급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 46조 (공급세대수의 3% 이내) : 총 23세대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1.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2.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3.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하고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1순위 요건 필요)
당첨자 선정방법	- 공급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양주시 거주자(1년 이상 계속) 30%, 경기도 거주자(6개월 이상 계속) 20%,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6개월미만)] 내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 공급 2.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유의사항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 ※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무주택 기간 산정시 적용 대상 : 청약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기준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로 봄 ※ 소형 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불인정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총 배점	가점 세부 항목			
		가점 구분	점수	가점 구분	점수
계	84				
① 무주택 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	-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 상기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내용으로 상기 내용이 입주자모집공고와 상이할 경우 입주자 입주자 모집공고가 우선합니다.
 ※ 본 홈페이지는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청약사항은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와 입주자모집공고가 상이한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가 우선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 1877-3447로 문의 바랍니다.